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7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신장식·진선미·허성무

박정현 • 백선희 • 장종태

강경숙 · 김재원 · 황운하

정춘생 · 서왕진 · 민형배

한창민 • 이해민 • 김선민

차규근 · 강준현 · 민병덕

이강일 · 김준형 · 정혜경

박지원 · 김용만 의원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파산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를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로, "의한 절차의"를 "의한 행위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지명령을"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로 한다.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 송행위를 제외한다.

제45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로, "강제집행등의"를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

위를 제외한다.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명령 및"을 "중지명령· 금지명령 및"으로 한다.

제25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7조를 삭제한다.

제5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2에 의한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제60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 송행위를 제외한다.

제62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무자 외의 자가 부담한 채무 또는 제공한 담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3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	
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	
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	
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1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	다
한 중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	①
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	
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	

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 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 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략)

- ② (생략)
-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중지명령을</u>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저 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 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
<u>위의 금지)</u>
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
<u> 2의의한 행위의</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
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u>.</u>
④ (현행과 같음)
1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
적 금지명령) ①
<u>중</u>
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기한 <u>강제집행등의</u> 금 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7 취하의 제한) ① (생 략)
 - ②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 다.
 - 1. 2. (생략)
 -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지명령
 - 4. (생략)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u>강제집행 및 채무</u>
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
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4. (현행과 같음)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u>.</u>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 ② (생 략)

③ 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 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 (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 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 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 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 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 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 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 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 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4.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지</u>
<u>명령·금지명령 및</u>

1. ~ 3. (현행과 같음)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다. 1. ~ 4. (생 략)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 제250소(외생계획의 요딕범위) (L (생 략)
 -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 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 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 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 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 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

<u>.</u>	
1. ~ 4. (현행과 같음)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1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593조(중지명령)	①

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u><신</u>설>

5. (생략)

② ~ ⑤ (생 략)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 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 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하하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② ~ ④ (생 략)

.	<u>다만,</u>	제4호	호의20	에 의한
행위의	경우	개인	회생치]권자에
<u>게</u> 부딩	당한 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대	대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u>다.</u>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 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 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

- ② (생 략)
-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삭 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 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u>다.</u>
- ② (현행과 같음)